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72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김기웅 · 김태규 · 이달희
박덕흠 · 윤용근 · 임종득
백종헌 · 최은석 · 안철수
이종배 · 김 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 이동 수단 확보 및 대형 의료기관 내 복잡한 행정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간 격차가 큰 실정임.

또한, 경로당은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수적임에도 냉난방 · 공기질 · 환기 · 단열 등 경로당의 종합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제고하려
는 것임(안 제27조의5 및 제37조의4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동행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동행 지원 사업(이하 “동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동행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1. 의료기관 방문 및 귀가를 위한 이동 지원
2. 접수·수납·진료·검사 등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 대한 지원
3.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수령 시 동행 지원
4. 그 밖에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행지원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동행지원사업의 대상·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동행지원사업의 방법, 위탁 및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4(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하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는 냉난방·공기질·단열 등 경로당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포함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경로당 생활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로당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 운영자 등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및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5(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동행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 기관 이용 동행 지원 사업(이하 “동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동행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u> <u>1. 의료기관 방문 및 귀가를 위 한 이동 지원</u> <u>2. 접수·수납·진료·검사 등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 대한 지원</u> <u>3.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수령 시 동행 지원</u> <u>4. 그 밖에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u> <u>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행지원사업을 노인 관련 기 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u>

<신 설>

원할 수 있다.

④ 동행지원사업의 대상·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동행지원사업의 방법, 위탁 및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하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는 냉난방·공기질·단열 등 경로당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포함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경로당 생활환경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생활환경
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로당에 대하여 관할 지방
자치단체 또는 시설 운영자 등
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
다.

⑤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구체
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고,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및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